

『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'06. 6. 23 개정·공포된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에 의한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
-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·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
-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옥외광고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옥외광고업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광고물설치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(안 제2조)
 - 제2조제1항제2호중 “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”을 “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”으로 한다.
 - 제2조제1항제6호중 “영 제4조제8호의”를 “영 제4조제1항제8호의”로 한다.

-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규정(안 제31조, 별표 1의2)
 -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옥외광고물 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.9㎡이상의 작업장을 구비하도록 규정(옥외광고대행업은 6.6㎡이상의 사무실로 규정)
-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규정 중 법령명칭 변경(안 제32조)
 - 「향토예비군법」 ⇒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
- 옥외광고업의 휴·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(안 별표 5)
 - 옥외광고업을 휴·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(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4의 규정)

4. 참고사항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1조(옥외광고업의 등록)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 (허가대상 광고물 등)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41조(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)
-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- 3599(2006. 6. 30)호의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
 - 2006. 6. 23 개정 공포된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」에 의거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

- 옥외광고업의 휴·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임

○ 주요내용은

-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「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」을 「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」으로 조정하고
-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옥외광고제작업은 연면적 9.9제곱미터 이상,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.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구비토록 규정하였음
- 또한 옥외광고업을 휴·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임

-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.